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 11. 2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상정 및 의결: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 11. 29.)

2. 제안이유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1,261,560천원
 -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관 필요
 -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 달서문화재단 설립·운영

- 2025년도에는 달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300,000천원과 운영을 위한 961,560천원을 포함한 1,261,560천원을 출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 일상화 추진에 기여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정산 의무가 없는 출자·출연금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서구가 출연한 (재)달서문화재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5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규모

- 출연 예정금액 : 1,261,56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 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달서구 출연금	2025년 1월~ 12월	1,115	1,230	1,262	1,262			1,262	

- 기본재산: 300,000천원(2024년 현재 기본재산 3,950,000천원)
- 운영비: 961,560천원(신규사업 기획 등 운영비 추가 시 추경편성 예정)

-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바,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0,556	950	765	778	864	886	948	975	1,026	961	1,173	1,230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2022년	2023년		기관 요구액	부서 검토액	증감	전년대비 증감액
총계	961	1,173	1,230	1,262	1,262	-	32
기관운영비	476	513	614	587	587	-	△27
인건비	345	352	370	414	414	-	44
경상비	131	161	244	173	173	-	△71
사업비	485	660	616	675	675	-	59
적립금	300	300	300	300	300	-	-
문화예술진흥	185	360	316	375	375	-	59

○ 다만, 지난 3년간 증감을 살펴보면 경상비는 2024년 83백만원 증액, 2025년 71백만원 감액되었고, 문화예술진흥비는 2024년 44백만원 감액, 2025년 5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023년 7백만원, 2024년 18백만원, 2025년 4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적립사업비로 형성되는 기본재산의 관리(예치)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